

光州廣域市西區地域發展諮問委員會運營條例案 審 查 報 告

1995年 9月
總務社會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5年 9月 12日
- 나. 提出者 : 光州廣域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5年 9月 20日
- 라. 上程日字 : 1995年 9月 25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5年 9月 25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企劃監査室長 李 龍 玉)

가. 提案 事由

- 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중·장기 발전에 대한 정책개발과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고
-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등으로 지역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구성인원 : 위원장 포함 25인이내
- 기 능 :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·심의
 -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의 개발 연구
 - 재정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사업의 발굴·검토·건의
 -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자문
 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음
- 위원회의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·추진상황 관리 연구를 위해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음
-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·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李海萬)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
-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의 개발·연구·재정구조 개선·경영사업의 발굴등을 심의 연구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필요한 조례안이나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문중 상근위원이나 사무직 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(개정 95. 7. 1)로

규정되어 있으므로

○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조례안중 제8조 (상임위원)는 내무부장관의 미리 승인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음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략

6. 審査 結果 : 수정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구정발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·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하고,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·연구 심의한다.

1. 구의 증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
2. 재정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3.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
4.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 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.

③임기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 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8조 (상임위원)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· 보고

2.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사항에 대한 종합추진상황 관리 · 보고

3. 기타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세부 조사 · 연구

②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의견 청취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자료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고,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 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, 세미나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(수정)안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구정발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·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하고,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제 3 조 (기능)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·연구 심의한다.

1. 구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
2. 재정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3.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
4.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5. 환경 교통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6 조 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.
③ 임기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 7 조 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 8 조 (상임위원)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·보고

2.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에 대한 종합추진상황 관리·보고

3. 기타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세부 조사·연구

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9 조 (의견 청취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자료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등을 요구할 수 있고,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, 세미나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기타사항) 제8조(상임위원)는 사전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한후 위촉하여야 한다.

나. 主要骨子

-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규정을 삭제 (조례 제4조)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·하천)으로 취득(보상취득) 또는 계획 변동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통보 규정 신설 (조례 제37조의 2)
- 조례 제3조의 규정(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)에 의한 위임 받은 자는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신설 (조례 제39조의 3)
- 관사 운영비의 부담 규정중 전기·수도요금·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공관리비 부담을 1급 관사에서 1·2급 관사로 조정 (조례 제55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李海萬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재산의 범위중복 규정을 삭제하고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
- 재산 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위임사무중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책임을 강화하고

○ 관사운영비의 부담 기준을 1급 관사에서 1·2급 관사로 조정된 것으로 광주광역시 준칙안과 같이 조항이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심사후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